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택직접지불제도 종류 확대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90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2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개요

1.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1
가. 제안경위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3
가. 제안경위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1. 선택직접지불제도 종류 확대	5
2. 공익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의결기능 추가 확대	17
3.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	23

[참고자료]

참고 1. 농업직불제 개요	27
참고 2. 선택직불제 개요	28

I. 개 요

1. 이원택의원 대표발의(2200090)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3.
- (3) 회 부 일 : 2024. 6.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라 함)로서 기본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한 사항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201028)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7.
-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리가 높음.

이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락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

II. 검토의견

1. 선택직접지불제도 종류 확대

(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두 건의 개정안은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공통적으로 추가 규정하고,

이원택의원안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윤준병의원안은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추가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생략)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④ (생략)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u> 5. <u>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u> 6. <u>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u> 5. <u>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u> 6. <u>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u> ③·④ (현행과 같음)

‘생산조정직불제도’는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등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는 2024년 예산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신규도입된 것임.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여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함.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는 농업인등이 가축분뇨와 농식품부산물을 자원화하는 활동을 이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임.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도입 목적과 대상 작물 등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경축순환’의 개념 등이 아직 학계에서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축순환의 개념 및 지원 가능 활동 등에 대한 연구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임.

현행법 제21조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¹⁾하고 있으므로 모든 선택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선택직불제도를 대통령령에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연내에 정책연구 및 농업인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신설·확대할 선택직불제의 종류 등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1)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농업직불제는 정부가 정부재정으로 개별 농업인들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임.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9가지의 직불제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① 직불금 지급이 쌀에 집중됨에 따라 쌀 과잉 공급이 심화되고 ②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20.5.1. 시행)」로 전부개정하여 기존의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하였음.

개편을 통해 기존 9개의 직불제 중 6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이를 기본직불제와 기본직불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직불제로 운영하는 한편,

경영이양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FTA 폐업지원제는 공익직불제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내용】

개편 전		개편 후		개편후 직불금 내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① 기 본 직 불 제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 급(2024년 기준)
쌀소득보전직불제 : 고정, 변동			면적직불금 (역진적 단가)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밭농업직불제 : 고정, 논이모작		② 선 택 직 불 제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라 추가 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 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 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친환경축산직불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 산비 차이 보전
			전략작물직불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과, 2024.8.4.)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은 별도 운영

2023년을 기준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기본형 직불제에 2조 5,081억원, 선택형 직불제에 1,379억원이 지급되었음.

【최근 3년간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021~2023년】

(단위: 천ha, 천건, 억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기본형 직불제	1,083	1,122	22,268	1,058	1,129	21,943	1,109	1,285	23,018
－ 소농직불	146	450	5,399	144	450	5,405	153	490	5,875
－ 면적직불	937	672	16,869	914	679	16,538	956	795	17,143
선택형 직불제	143	94	819	131	96	741	169	119	1,379
－ 친환경직불 (농업+축산)	36	36	255	33	35	228	33	33 (축산2건)	214
－ 경관보전직불	14	11	91	13	11	86	11	11	85
－ 전략작물직불 (~ 22 논활용작물)	93	47	473	85	50	427	125	73	1,08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선택직접지불제도란 농업인 혹은 농촌 주민이 기본직불 준수 의무²⁾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익 수준을 넘어서는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 협약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그 종류와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선택직접지불제도는

①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

②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

③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친환경축산직불’로 구성됨.

추가적으로 ④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령에서 ‘전략작물직불제’를 규정하여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들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보완 요구사항으로 선택직불제도의 확대 및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³⁾.

공익직불제는 개편 전 기본직불에 소농직불 도입, 역진적 단가체계

3)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 충남연구원, 20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2021.10.1., p23

* 한국농정, “공익직불제, 선택형직불제 채워야 완성된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3>, 2022.4. 17.

적용, 농가 준수의무사항을 부여하여 규모 간·품목 간 형평성 개선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현행 선택직불은 기존 직불제의 공익증진형 직불제로 분류되었던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축산직불, 논활용직불을 단순 통
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된 것이어서 사업의 내용과 범
위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등 공익기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적극적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생산조정직접지불제
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
도 등을 추가하여 선택직불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다만,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를 열거한 현행법 및 개정안 제21조제
2항 각 호의 경우, 각 개별 선택직접지불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
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각각의 선택직접지불제도의 개념은 시행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② 선택직접
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의 보고서, p50

또한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각각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3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계 논이모작을 지원하는 기존의 ‘논활용직접지불제’에 하계작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 확대 개편하였고 2023년부터 시행 중임.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 제21조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제도 운영의 유연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시행령 규정 사항을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는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타 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도입 목적과 대상작물 등이 중복될 수 있어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전략작물직불과 쌀 생산조정제 비교 】

구 분	전략작물직불	쌀 생산조정제
목적	○ 중요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주 목적) ○ 벼 재배면적 축소	○ 벼 재배면적 축소를 통한 쌀공급 과잉 해소가 주 목적
대상 품목	○ (동계) 밀,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 (하계)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 작물 제한 없음 * 다만 벼 대체를 위해 하계 논 재배가 가능한 작물
지원 단가 (/ha)	○ 동계조사료·밀 : 50만원 ○ 가루쌀·두류 : 200만원 ○ 하계조사료 : 430만원 ○ 옥수수 : 100만원 ※ 동계조사료·밀 + 두류·가루쌀 이모작 할 경우 100만원/ha 추가 지급	○ 조사료 : 430만원 ○ 일반작물 : 270만원 ○ 두류 : 255만원 ○ 휴경 : 210만원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기준
예산	○ (‘24) 1,865억원	○ (‘20) 544억원
지원 조건	○ 국고 100%	○ 국고 80%, 지방비 20%
시행 기간	○ ‘23~ * 종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18~‘20(3년) * 쌀 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기간 을 한시적으로 정하여 실시 (과거 3차례 모두 3년간만 운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2024.8.21. 제출)

○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발표하는

등⁵⁾ 탄소저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참고로 타 국가에서도 농업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유사 제도들이 있는데, EU의 공동농업정책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 기후환경친화적인 다양한 조치(녹색조치, 상호준수의무, 농업환경기후조치 등)들을 직불제와 연계하여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도하고 있음.

일본 역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환경보전형농업 직불제’를 통해 탄소저감, 지구온난화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를 확산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⁶⁾.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현재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며 프로그램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⁷⁾.

-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은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 2023. 3.2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환경부 발표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2021.10.1.

7) 농림축산식품부의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도입 검토(안) : (’23년) 도입안 마련, (’24~’25년) 시범사업 시행

2. 공익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의결기능 추가 확대 등

(이원택의원안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4항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이원택의원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횟수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 행	이원택의원안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u>심의·의결하기</u> ----- ----- ----- -----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 .	② ----- ----- <u>심의·의결한다</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u>

현행	이원택의원안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제4항----- ----- ----- -----.

현행법은 공익직불제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의적으로 두도록 함.

동 심의위원회는 2019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으로 전부개정(2020.5.1. 시행)되면서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21년 5월 구성되었음.

심의위원회는 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④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구성	2021.5. 11.
소속 및 성격	농림축산식품부 / 자문위원회(자문)
설치 목적	·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주요기능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위원 총 21명 : 당연(6명), 위촉(15명) [공무원(6명), 민간위원(15명)] * 공무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 민간위원 : 농업인단체 등 15명(농업인단체 5, 소비자단체3, 언론인 2, 학계 및 전문가 5) - 위촉위원 임기 : 3년('21.5.24. ~ '24.5.23.)
예산	없음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없음 ⁸⁾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2024.8.2.제출)”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있어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심의 기능 외에 의결 기능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7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법’)」⁹⁾을 제출(2024.7.23.)하였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법의 내용은 현행 “공익직불 운영 심의위원회”를 “공익직불 운영 협의회”로 개정하고, 이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여부에 따라 공익직불 운영 심의위원회의 성격 및 운영 기간 등이 바뀌게 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현 시행령의 규정 사항 그대로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8)

9)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당초 26개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를 9개로 통·폐합 및 비상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적절하다는 입장임.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따르면,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개정안의 요건에서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가 제외됨.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서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위원이 원한다면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의 소집 절차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원택의원안(제4항 신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④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u>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심의위원회는 구성 이후 2024년 현재까지 회의 실적이 전무한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처럼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더욱이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조문을 두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② “공익직불 운영 심의위원회”를 “공익직불 운영 협의회”로 개정하고, 이를 비상설화하려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법 일괄 개정안(정부제출, 2024.7.23.)’이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

(윤준병의원안 제36조제1항)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 검증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직불금의 신청·접수·변경등록을 온라인화하는 등 공익직불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임.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도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 ----- -----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현행	윤준병의원안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근거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운영(‘20.5~)하고 있고, 시행령상으로도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 ‘기본직불시스템’으로 공

익직불사업의 신청·접수, 자격 검증, 정보공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관리, 지급 등 제반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관련 정보의 내실있는 관리에 기여하고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유사업법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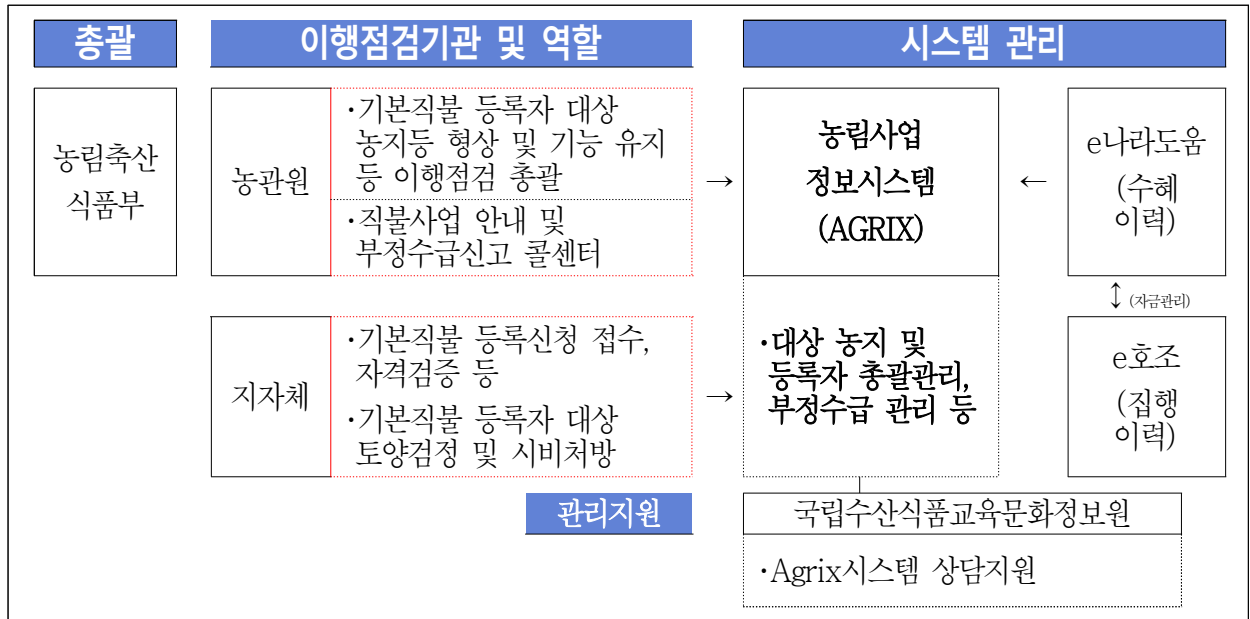
- (개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본으로 농식품 보조사업(148종)을 신청 및 관리하는 시스템
- (구축DB)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 토양개량제, 면세유관리 등 농림사업(보조금, 융자 등)에 대한 신청·이행점검·정산·부정수급 관리 등 일련의 사업관리 및 사업안내서 관리
- * (경영체 통합사업) 토양개량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재해대책사업, 농기계임대, 인삼류제조업 신고관리 등
- (정보연계 사업)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농업자금이차보존, 농촌출신대학생지원 등

<기본직불시스템>

- (개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농지·소농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각 시스템에 분산된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결과 제공
- (구축DB) 경영체등록정보, 농지대장, 국토부 토지대장,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농협 농자재구매이력 등 11개 기관에서 16항목 연계
- * 사전검증 29항목, 실시간검증 28항목('24기준)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2024.8.2.제출)

【 공익직접지불 관리 시스템 관련 사업 집행 절차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2024.8.2.제출)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 1

농업직불제 개요

종 류 (‘23년 예산)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 지급현황(‘22)																								
공익 직불제 (‘20~) (27,634 억원)	기본형 직불제 (25,805억원)	<기본형 직불제, 25,805억원(‘23)> ○ 지원목적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지 :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등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지원대상 :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16~‘19년 기존 직불금 수령자,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천 5백만원 이상) ○ 지원단가 <table><tr><th rowspan="2">구간 단계</th><th rowspan="2">소농직불금 (0.5ha 이하)</th><th colspan="3">면적직불금(만원/ha)</th></tr><tr><th>0.1~2ha</th><th>2~6ha</th><th>6~30ha</th></tr><tr><td>논·밭 진흥</td><td rowspan="3">120만원/가구</td><td>205</td><td>197</td><td>189</td></tr><tr><td>논 비진흥</td><td>178</td><td>170</td><td>162</td></tr><tr><td>밭 비진흥</td><td>134</td><td>117</td><td>100</td></tr></table> ○ 지급건수(‘22) : 1,129천건(소농 450, 면적 679) ○ 지급면적(‘22) : 1,058천ha(소농 144, 면적 914) ○ 지급액(‘22) : 21,943억원(소농 5,405, 면적 16,538)				구간 단계	소농직불금 (0.5ha 이하)	면적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	120만원/가구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구간 단계	소농직불금 (0.5ha 이하)	면적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	120만원/가구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사업비· 이행점검비 (365억원)	<사업비 : 115억원, 이행점검비 : 251억원(‘23)> ○ 지원목적 : ① 공익직불 신청·접수·지급에 필요한 지자체 행정경비, 홍보, 연구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2024.8.2. 제출)

참고 2

선택직불제 개요

종 류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20년 개편 시행) ‘24년 2조 6,335억원		○ 지원목적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지 :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등																						
		○ 지원대상 :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16-’19년 기존 직불금 수령자,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천 5백만원 이상)																						
		○ 지원단가 : 진흥/비진흥 논·밭 및 면적구간에 따라 차등																						
		<table><tr><th rowspan="2">단계 \ 구간</th><th colspan="3">면적직불금(만원/ha)</th><th rowspan="2">소농직불금 (0.5ha 이하)</th></tr><tr><th>0.1~2ha</th><th>2~6ha</th><th>6~30ha</th></tr><tr><td>논·밭 진흥지역</td><td>205</td><td>197</td><td>189</td><td rowspan="3">130만원/가구</td></tr><tr><td>논 비진흥지역</td><td>178</td><td>170</td><td>162</td></tr><tr><td>밭 비진흥지역</td><td>134</td><td>117</td><td>100</td></tr></table>				단계 \ 구간	면적직불금(만원/ha)			소농직불금 (0.5ha 이하)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130만원/가구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단계 \ 구간	면적직불금(만원/ha)			소농직불금 (0.5ha 이하)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130만원/가구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선택형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99~) ‘24년 228억원	○ 지원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유기 5년, 무농약 3년)																						
		○ 지원단가 : 인증단계 및 논/밭/과수 등 구분에 따라 차등																						
		<table><tr><th rowspan="2">인증단계</th><th rowspan="2">논(천원)</th><th colspan="2">밭(천원)</th></tr><tr><th>과수</th><th>채소·특작·기타</th></tr><tr><td>유기(5년)</td><td>700</td><td>1,400</td><td>1,300</td></tr><tr><td>무농약(3년)</td><td>500</td><td>1,200</td><td>1,100</td></tr><tr><td>유기지속(영구)</td><td>350</td><td>700</td><td>650</td></tr></table>				인증단계	논(천원)	밭(천원)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5년)	700	1,400	1,300	무농약(3년)	500	1,200	1,100	유기지속(영구)	350	700	650	
		인증단계	논(천원)	밭(천원)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5년)	700	1,400	1,300																					
무농약(3년)	500	1,200	1,100																					
유기지속(영구)	350	700	650																					
선택형 직불제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09~) ‘24년 16억원	○ 지원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 받은 자 중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단가 : 한우170 천원/두, 돼지16 천원/두, 육계200 원/마리, 젖소(우유) 50원/L, 계란 10원/개, 오리 400원/마리, 오리알 20원/, 산양 4,584원/마리, 산양유 34원/L																						
선택형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05~) ‘24년 168억원	○ 지원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집단화된 농지(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경관작물)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헤어리베치 등 (준경관작물)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지원단가 : 경관작물:170만원/ha 준경관작물:100만/ha, 준경관초지:45/ha																						
전략작물		○ 지원목적 :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버																						

종 류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직불제 ('23~) '24년 1,865억원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 전락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 (동계작물 단일재배) 1ha당 50만원, (하계작물 단일재배) 가루쌀·두류 1ha당 200만원, 하계조사료 1ha당 430만원, 옥수수 100 (전락작물 이모작 재배) 동계 밀·동계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 이모작하는 경우 1ha당 100만원 추가 지급(350만원/ha)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24~) '24년 90억원	○ 지원목적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 ○ 지원대상 : 기본형 직불 수령 농가 중 시범사업 예산제약,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경영체 중심 추진 - (경종)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해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축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단가 * (중간 물떼기) 1ha당 15만원, (얇게 걸러대기) 1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1ha당 36.4만원 (저메탄사료 급이) 두당 2.5~5만원, (질소저감사료 급이) 두당 0.5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2024.8.2. 제출)